

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

# 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서정호

#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3년 8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3년 8월 30일

3. 제안이유

- 남부출장소 주차장 내 공용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에 따라, 사업시행자(한국전력공사)의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4. 주요내용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: 2023. 8. ~ 12.
- 설치장소: 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면
- 사 업 비: 한전 전액부담
- 사 업 량: 100kw(콤보1) 급속충전기 2대(기) 구축
- 수행기관: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(구축·설비 총괄 운영)
- 주요내용: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충전소 부지제공

□ 참고사항
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(한전→도): 4.28.
  - 충전소 설치 관련 업무협의(주변여건, 전력설비 등): 4~6월
- 2023년 공용전기차 구축사업 수요조사 제출(도→한전):5.9.
-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(한전→도): 7.15.
- 공용전기차 충전소 구축(설계, 시공, 준공): 8~12월
  - 설계(8월), 시공(9~11월)
  - 준공 및 서비스 시행(12월)
- 충전기 설치 예정지



○ 충전기 설치기준



## 5. 검토의견

- 본건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청북도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'23년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설치부지를 제공하려는 것으로,
- 본건 동의안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 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(사용허가), 제21조(사용허가기간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(사용허가의 방법)에 따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-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기간 내에 100kw(콤보1)급 급속충전기 2기를 주차면과 함께 구축하는 것임.
- 충전설비의 구축과 설비 총괄 및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가 전액 부담하고 충전소 부지(남부출장소 민원인 주차장 내 2면)만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에서 제공하는 것이며, 그 외 사용료, 사용기간 등은 관련 법령과 당사자간의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.
- 본건 공용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의 정책에 부합하며, 전기차를 이용하는 민원인 및 도민들이 남부출장소에서 편리하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- 다만, 해당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으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후 사용 및 유의사항을 정확하게 안내하여야 할 것이며, 남부출장소 내 설치된 시설물 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됨.

붙 임: 충청북도(남부출장소) 공용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. 끝.